

EU가맹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II)

공동집필 ·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러

< 목 차 >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그리스
5. 이탈리아
6. 룩셈부르크
7. 덴마크
8. 포르투갈
9. 네덜란드

2. 독일

1989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독일의 제조물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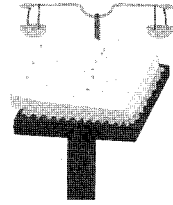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무 위반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조물책임은 거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법원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해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원고 곧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특히 약업 분야에서 제조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우는 움직임이 고조되어 그 결과 1976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회사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1950년대 후반 그뤼네탄사가 개발한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난 사건으로 제조물책임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세계 각 국에서 피해가 빈발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서독은 피해가 커서 그 피해자 수가 3,000~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8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2년 후 화해로 끝났지만 그 화해액은 제조자 1억 마르크, 연



방정부 1억 마르크로 총액 2억 마르크의 거액이었다.

그리고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이 EU 이사회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각 가맹국은 EU지침에 따라 1988년 7월 30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해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할 의무가 지워졌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1988년 6월 9일 연방의회에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안]이 연방정부안으로 제출되어 1989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EU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발위험의 증명은 제조자측에서 해야 한다.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두는 것이 독일에서의 종래의 방식이라고 해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또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1)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한 EU지침 제15조 제1항(a)의 선택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 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전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결국 EU 지침 제2조와 동일하다.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도 제1차 가공을 하게 되면 책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제1차 가공자가 최종 생산물의 제조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종 생산물의 제조자는 원료에 문제가 있거나 부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제조물에 대해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물적손해에 대한 면책액

물적손해의 경우 최종 소비자는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결함 있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조물 그 자체의 훼손은 보증의 특별규정을 통해 만족스럽게 규제되기 때문이다.

즉 결함제조물에 의해 다른 재물이 손괴되고 또한 그 다른 재물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재물인 경우에만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 물적손해의 경우 피해자는 1.125마르크까지의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EU지침 제9조를 입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다른 법률, 가령 민법 제823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전통적인 제조물책임법리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책임한도액

동일 결함을 가진 동종 제품에 의해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1억 6,000만 마르크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독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 대해 책임한도액

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①책임형태에 있어서의 형평, ②경제적인 예견가능성, ③제조자의 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위한 것이다.

즉 무제한적인 책임으로부터 제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물적손해의 경우에는 책임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요구는 여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배상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이 규정은 EU지침 제16조제1항을 입법한 것이다.

4)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이나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 제조자는 책임을 면한다. 1976년의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품 분야는 제외한다.

5) 의약품책임 등

1976년의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약품에 관한 한 개발위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본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규정에 의해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청구권 외에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과 계약의 적인 청구권, 예를 들면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위험책임이나 과실책임에 근거한 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한도액(제10조)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1.125마르크까지의 피해자 직접부담금(제11조)과 비사적인 범위의 물적피해(제1조 제1항 참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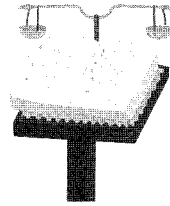
6) 위자료 및 기타 관련 규정

위자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전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또 사망 및 신체상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명기한 것,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제9조)이 주목된다.

기타 무과실책임의 원칙(제1조 제1항 : EU지침 제1조), 제조자의 면책사유(제1조제2항, 제3항 : EU지침 제7조), 입증책임(제1조제4항 : EU지침제4조, 제7조), 결함의 판단기준(제3조 : EU지침 제6조), 제조자의 범위(제4조 : EU지침 제3조), 연대책임(제5조 : EU지침 제5조), 책임경감(제6조 : EU지침 제8조),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제14조 : EU지침 제12조), 소멸시효 및 청구권의 소멸(제12조, 제13조 : EU지침 제10조, 제11조), 제조물책임의 복선적 구조(제15조 : EU지침 제13조) 등은 EU지침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3. 프랑스

프랑스는 EU제조물책임지침에 근거한 제조물 책임의 국내규정을 민법(Code Civil)의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으



나, 최근까지도 입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1993년 EU법원으로부터 EU지침에 기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판결을 받고도 제조물책임규정의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8년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진행되어 지난 1998년 4월 30일에 [결함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민법개정 정부안이 의회(Assemblée Nationale)에 제출되었으며, 1998년 5월 5일 원로원에서 가결되고 대통령이 5월 19일 서명하여 5월 21일에 관보(Journal Officiel)에 발표되었다.

프랑스제조물책임규정은 제조물책임을 민법상의 규정으로 하는 한편, 그 규정을 민법체계상 비계약적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민법 제4장의 다음에 규정하여, 제조물책임 규정의 적용영역이 계약적 영역과 불법행위영역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함제조물책임을 규율하는 프랑스민법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가 있다. 인적손해는 신체에 대해 생긴 손해를 말하며, 물적손해는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대해 생긴 손해를 말한다.

그런데 본 법은 물적손해를 개인적인 사용이나 소비를 위한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가 EU지침(제9조)보다 넓다. 일본과 미국이 이러한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EU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손해에 대한 최고 배상한도액(EU지침 제16조 제1항)과 물적손해에 대한 최저 배상한

도액(EU지침 제9조)등의 배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2) 제조물의 범위

본 법은 그 적용대상인 제조물에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동산과 전기는 물론 1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지침은 1차 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조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에게 위임하고 있다(EU지침 제2조·제15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스랜드, 미국 등이 1차 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1996년 6월 이들은 제조물이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EU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민의회 제1독회에 제출된 백그 보고 서에서도 ①이들은 공업제품 또는 상품교환에 관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인체, 그 구성요소, 그 산물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민법 제16조의 1을 인용하고 있다. ②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보다 후에 성립한 시판 의약품에 관한 EU지침이 사람이 혈전, 혈장, 혈액세포를 그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③EU지침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보호가 현재의 프랑스 판례 및 보상제도(히드 면역부전(免疫不遂)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혈자 및 혈우병 환자를 구제하는 보상제도)보다 후퇴하는 점을 들어 이들은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로원 제1독회는 ①피해자는 종래의 책임제도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② EU지침이 가져오는 책임법의 단순화라고 하는 장점을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미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③히드 면역부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서는 이미 보상제도가 있지만, 그 밖의 C형 감염 등의 경우도 있고, 장래에는 각종의 치료에 기인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이들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3) 유통시점에서의 의의

EU지침은 유통시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EU지침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본 법은 이를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을 단 한 번만 유통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회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원로원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결국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한 번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모든 공급자에게도 제조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본 법 제1386조의 7 제1항의 취지로 볼 때, 유통상 각 공급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양도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시점은 제조물을 유통시키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소멸한다는 본 법 제1386조의 16과 관련해 그 시점에 대한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다.

4) 판매자·임대인·기타 공급자의 책임

본 법에서는 판매인과 임대인 기타 모든 사업자로서의 공급자는 제조자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프랑스 판례법은 제조자인지 여부를 물문하고 모든 사업상의 판매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켜 온 귀결로써 게스탄 초안 이후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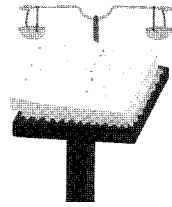
다만, 임대인 중 금융목적의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93년 법안에는 '리스업자 또는 리스업자와 동일시되는 임대인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없었지만 원로원 제1독회에서 이 구절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EU지침은 제조자를 제1차적인 책임주체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5) 면책특약의 금지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EU지침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EU지침에서는 영업용 재산에 관한 손해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본 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간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은 사업자의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의 면책특약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개발위험의 항변

본 법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면서, ①손해가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해 생긴 경우 또는 ②제조물을 유통시킨지 10년



이내에 결함이 밝혀진 경우에, 그 제조자가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한 손해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産物)에 의한 손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체에서 유래하는 의약품에 의한 손해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나아가 사람의 혈액 그 자체의 수혈이나 조직이나 장기의 이식과 같은 경우에도 본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 법의 심의과정에서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대해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찾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법은 제조물책임법에 공중위생법적 성격을 혼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점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흥미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 유통 후에 결함이 판명된 경우

제조물의 유통 후 10년 이내에 밝혀지게 된 결함에 대해, 제조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개발위험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제조물의 유통 후에도 제조자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EU지침에는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게스탄 초안 이후 인정되어 온 것으로, 소비자법전에도 이러한 입장에 기한 규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법안에서는 '적절

한 조치, 특히 공시, 점검을 위한 신청, 제조물의 회수'로 예시되고 있고, 원로원 제1독회에 제출된 위원회 보고서는 이 예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4.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1988년 3월 31일에 국가경제부·사법부·산업에너지기술부·상무부가 공동으로 EU지침에 근거하여 국내 제조물책임 규정(부령)을 제정하였고, 198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스제조물책임부령은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일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EU제조물책임지침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시 그리스의 제조물책임부령에서도 제조물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며, 제1차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위험의 항변을 제조자는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리스제조물책임부령에 대해서는 그 합헌성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스헌법에 의하면 부령으로 되어 있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규정은 부령으로 규율할 수 없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부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부령의 합헌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현재 그리스상무부는 제조물책임 뿐만 아니라, 소비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의 소비자보호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